

의안번호	제45호
의 결 년 월 일	2026. 4. 22. (제337회)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금 산 군 수
제출년월일	2026. 4. 10.

#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5호
------	------

제출년월일 : 2026. 4. 10.  
제 출 자 : 금 산 군 수

## 1.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한 세 부담 경감 조치를 이행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 개정사항 반영(안 제7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개정
    - ※ 재산세 경감률 : 100분의 50 → 최초 5년간은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4항 위임 사항 신설(안 제8조의2)
  -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반영
    - ※ 지방세 감면 : 재산세 및 자동차세 100% 감면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제9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60조  
시·군 표준조례(안) 통보 [충청남도 세정과 - 836(2026.01.16.)]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 기 타
  -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 해당없음(기획예산과-3031)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예산과-3028)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가족정책과-8376)
  - 입법예고(2026. 2. 20. ~ 2026. 3. 12.) : 제출의견 없음

##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면제한다.

1.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로 한정한다)
2.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u>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u></p> <p><u>&lt;신 설&gt;</u></p>	<p>제7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u>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u></p> <p><u>제8조의2(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면제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로 한정한다)</u></li> <li><u>2.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u></li> </ol>

##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자연·사회재난 등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자동차세, 재산세)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이 군 내에 없어 당분간 재산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 요인 없음

나. 관련 조문 : 안 제7조, 안 제8조의2

###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차량, 부동산을 전제로 지방세 산정(자동차세, 재산세)

나. 추계 결과(산출기초 등) : 과거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감면 자료 기초로 함

- 감면액(연평균) : 150백만원(자동차세 5백만원, 재산세 145백만원)

### 다. 재원조달방안

-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통한 세원 발굴로 감소된 세수 확보

### 3. 작성자

행정복지국 재무과장 손 종 건(☎ 041-750-241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 150,000	△ 150,000	△ 150,000	△ 150,000	△ 150,000	△ 750,000
지방세 (자동차세, 재산세)		△ 150,000	△ 150,000	△ 150,000	△ 150,000	△ 150,000	△ 750,000
세 출							
재원 조달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지방세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관 계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지방세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⑤ (생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 ⑤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볼거리는 충남, 즐길거리는 충남, 먹거리는 충남, "충남이면 흥분해!"



## 충청남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시·군세 감면 표준조례(안) 송부

1. 최근 우리도 내 자연·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가 주기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신속한 세 부담 경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세 감면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 예정 중인 시군에서는 붙임의 시·군세 감면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군세 감면 표준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수신자 천안시장(세정과장), 공주시장(세무과장), 보령시장(세무과장), 아산시장(세정과장), 서산시장(세정과장), 논산시장(세무과장), 계룡시장(세무과장), 당진시장(세무과장), 금산군수(재무과장), 부여군수(재무회계과장), 서천군수(재무과장), 청양군수(재무과장), 홍성군수(세무과장), 예산군수(세무과장), 태안군수(재무과장)

주무관	정영준	과표소득세팀장	박수용	세정과장	전길	2026. 1. 16.
협조자	주무관	최미향	주무관	송인영	입성범	
시행	세정과-836				접수	재무과-1343 (2026. 1. 16.)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익로 송남대로 21				/ http://www.chungnam.go.kr/
전화번호	041-635-3637	팩스번호	041-635-	/ jy13375@korea.kr		/ 비공개

\*고향사랑e음\* 또는 "농협 방문"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 가능합니다.

## 시·군세 감면 표준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로 한정한다)</li> <li>2.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li> </ol>